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4/5 개정 · 7/6 시행 단, 일부 4/5 시행)

1) 개정목적

□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제도 등을 도입하고, 상법개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특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165조의2~3)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방법

- 상법 341조 1항에 따른 방법
-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 단,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상법 341조 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함

— 위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462조 1항에 따른 배당을 가능이익 한도 이내여야 함

— 주권상장법인은 위의 방법 또는 상법 341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 요건 및 그 방법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165조의7)

— 기존 조항 제목을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을 위와 같이 개정하고 문구 수정

☐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165조의9)

—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발행 등의 방법으로 신주 배정 시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418조 4항에 따른 기존 주주에 대한 신주발행사항의 통지 또는 공고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나) 자본시장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 정의 조항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추가(9조 17항 2호의2)

— 청산대상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산대상업자가 청산대상거래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이라 함

- 청산대상업자 :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의 의무화(제166조의3 신설)

— 장외파생거래 등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대해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청산하도록 함

- 장외파상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장외거래는 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를 '청산의무거래'라 함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청산의무거래 시 청산의무거래에 따른 자기와 거래상대방의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 central counter party)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 장외파생상품에 잠재된 결제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의 합의 사항으로서 장외파생상품의 리스크 관리수단으로 도입된 중앙청산결제서비스기구를 말한다. 중앙청산소의 핵심 기능은 거래당사자 간의 결제이행보장과 다자간 결제금액차감이며 이를 통해 결제불이행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G20 국가들은 CCP를 이미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323조의2, 4/5부터 시행)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아야 영업행위 가능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323조의3, 4/5부터 시행)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청산업 인가업무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함

—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별로 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정관 및 청산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 임원이 자본시장법 24조[1]에 적합할 것
- 대주주[2]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 위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인가요건의 유지(323조의6, 4/5부터 시행)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업인가를 받아 인가요건을 유지해야함

☐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323조의7, 4/5부터 시행)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인가받은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

---

1) 자본시장법 24조(임원의 자격) 참조

2) 자본시장법 12조 2항 6호 가목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업무(323조의10, 4/5부터 시행)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하의 업무를 행함

- 청산대상거래의 확인업무
-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에 따른 채무부담업무
- 청산대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차감업무
- 결제목적물 · 결제금액의 확정 및 결제기관에 대한 결제지시업무
-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업무

— 이외 위에 따른 업무에 수반되는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 청산업무규정 등(323조의 11, 4/5부터 시행)

— 금융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업무규정을 정해야 하며 정관 및 청산업무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 청산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청산대상거래 및 그 거래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사항
- 청산대상업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으로서 행하는 채무의 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부담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청산대상업자의 채무 이행 확보에 관한 사항
- 청산증거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에 관한 사항
- 비청산대상업자가 청산대상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 하여금 청산대상거래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의 중개 · 주선이나 대리에 관한 사항
-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청산증거금(323조의13, 4/5부터 시행)

— 청산대상업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금전 등으로 청산증거금을 예치하여야 함

• 단,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인정하는 청산대상거래는 제외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대상업자가 그 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산증거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 손해배상공동기금(323조의14, 4/5부터 시행)

— 청산대상업자는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금전 등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해야 함

• 단,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청산대상업자의 경우는 제외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청산대상거래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적립해야 함

— 청산대상업자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의 범위에서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해 연대책임을 짐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보전한 경우에는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에 대해 그 보전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관해 구상권을 가짐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구상권에 따라 추심된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에 충당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총적립규모, 적립방법, 사용 · 관리 · 환급 및 제4항에 따른 구상권행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장외거래정보의 축적을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323조의16, 4/5부터 시행)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의무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를 보관 · 관리하고 이를 금융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보고해야 함

• 거래정보의 보관 · 관리 및 보고의 요령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323조의20, 4/5부터 시행)

—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3조의3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별표8의2[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3/4/5 개정 · 4/5 시행)

1) 개정목적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기업금융시장의 균형적인 발전과 단기자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전자단기사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자단기사채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와 관련된 규제의 적용대상증권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을 제외하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에 전자단기사채등을 추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중 하나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 양도인지를 판단하는 자산총액, 매출액 등을 기존에는 개별 재무제표 상의 금액 기준으로 하던 것을 연결재무제표 상의 금액 기준으로 변경

2) 개정내용

□ 증권신고와 관련된 규제적용대상제외 증권 추가(119조 2항 6호)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증권 추가 신설

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

□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171조 1항 1호~3호, 5호)

— 기존 '자산총액'을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으로 변경

— 기존 '매출액'을 '매출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을 말한다)'으로 변경

— 기존 '부채총액'을 '부채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부채총액을 말한다)'으로 변경

— 이 규정은 시행 후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부터 적용

□ 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183조 3항)

— 전자단기사채 등의 장외거래 준용 항목 신설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241조 1항 7호)

— 단기금융상품에 전자단기사채등을 추가

연구원 이현정 (02-3771-0685, anet2@kcmi.re.kr)